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329

제안연월일: 2024. 12. .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2024. 6. 2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김상욱의원	2024. 7. 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 회의('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강선영의원	2024. 8. 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8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4.11.27.) 상정,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1. 27.)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 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 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 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 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현 행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제1 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 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 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 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단 서 신설> 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련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 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대통령 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 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 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 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 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 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	시는	1 3	등)	1	공	무	원여)	10 կ	긕
0]-	상	재.	직하	·고	퇴	직	한	경	우	네
는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네
해 '	당ㅎ	누는	때	부터		사	망형	할	때기	? }
ス)	퇴	진 ¢	여금.	으 :	지 :	급형	타다	-		

- 1. (생략)
-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 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 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 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 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 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 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 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 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 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 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 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 5. (생략)

② ~ ⑧ (생 략)

일시금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